〔解　說〕

日本의 大氣汚染防止法과 騷音規制法

日本政府는 第58回 國會에서 成立된 大氣汚染防止法과 騷音規制法을 지난 6月 10日字로 公布하였다.

이번에 制定된 大氣汚染防止法과 騷音規制法은 1967年 8月에 公布된 公害對策基本法에 依據한 施策의 具體化의 一環으로서 大氣汚染防止 및 騷音防止의 對策을 綜合的으로 强力하게 推進하기 爲하여 制定된 것이다.

아래에서 大氣汚染防止法 및 騷音規制法의 槪要를 說明하고 이들 二法과 電氣·가스設備와의 關聯에 關하여 言及하기로 한다.

大氣汚染防止法

1. 大氣汚染防止法의 槪要

大氣汚染의 防止에 關하여서는 1962年 以來 「煤煙 排出의 規制에 關한 法律」에 依據하여 工場과 事業場으로부터의 煤煙 等의 排出의 規制를 中心으로한 防止措置가 講究되어 왔다. 그러나 同法에 있어서는 그 規制가 工場과 事業場에서 發生하는 煤煙 等에 限定되어 있었다는 點, 豫防的인 見地로부터의 規制는 施行은 되었으나 充分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는 點等 公害를 防止함에 있어 萬全을 期한 것이었다고는 볼수 없는 點이 있었다.

이와 같은 狀況에 비추어 政府는 公害對策基本法에서 明示된 基本方向에 따라 從來의 「煤煙排出의 規制에 關한 法律」을 廢止하고 새로이 大氣汚染防止를 爲한 綜合的인 規制의 强化를 期하는 大氣汚染防止法을 制定하게 된 것이다. 大氣汚染防止法의 施行으로 從來의 煤煙規制法에 比하여 規制가 强化되거나 또는 새로이 講究되기로 된 施策의 主要한 것은 아래와 같다.

(1) 煤煙發生施設이 集合的으로 設置될 것이 豫想되는 地域을 미리 指定地域으로서 指定하고 그 煤煙의 排出을 豫防의 觀點에서 規制하기로 되었다(第3條 第2項).

이것은 從來의 煤煙規制法이 現在 大氣汚染이 顯著한 地域과 그 隣接地域만을 指定地域으로 하고 있었으나 最近에 이르러 地方에 大規模 工業地帶가 새로이 造成되고 이러한 地域에 있어서의 公害防止對策이 뒤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點과 規制를 받는 側으로서도 工場을 設置함에 있어 事前에 公害防止施設을 設置하는 便이 容易하다는 點에 비추어 公害發生의 未然防止를 期한다는 觀點에서 新規工業地帶를 事前에 指定地域으로서 規制對象으로 定하기로 한 것이다.

(2) 排出基準에 關하여서는 煤煙의 稀釋擴散의 程度 等을 考慮하여 그 設定方式의 合理化를 圖謀함과 同時에 여기에 都道府縣知事의 意見을 反映시키는 方途를 講究하기로 되었다(第4條).

即 從來의 煤煙規制法의 排出基準은 排出口로부터 排出되는 煤煙의 容量比로서 定해져 있었으나 問題가 되어야 할 것은 地上에 있어서의 濃度이다. 特히 稀釋擴散의 程度가 相異한 硫黃酸化物(亞硫酸가스 等)에 關하여서는 排出口에서의 容量比規制는 반드시 合理的인 것이 아니므로 地上에 對한 影響의 强弱을 考慮한 硫黃酸化物의 排出量과 煙突의 有效高度(煙突의 實高를 排出速度, 溫度 等에 따라 必要한 補正을 加한 높이)에 依한 排出基準으로 設定方式을 改定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排出基準은 指定地域別로 定하기로 되어 있어 그 地域의 汚染狀況을 비롯하여 地形, 氣象條件, 企業立地狀況 等을 考慮하여 設定

할 必要가 있기 때문에 排出基準을 定함에 있어서는 關係 都道府縣知事의 意見을 듣지 않으면 안되기로 規定하였다.

(3) 指定地域의 一部 區域에 있어 顯著한 大氣汚染이 發生하고 있거나 또는 發生할 危險性이 있는 地域에 新設되는 煤煙發生施設에 對하여서는 一般 排出基準보다도 嚴格한 特別 排出基準을 適用하기로 되었다(第4條 第2項).

이 特別 排出基準은 大氣汚染이 顯著한 地域의 汚染의 增大를 最小限度로 防止하려는 趣旨에서 나온 것이며 이 限界內에서 當該地域에 煤煙發生施設을 新設하는 者에게 可能한 最大限의 技術的, 經濟的 負擔을 要求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公害對策基本法에 依據한 環境基準이 將次 定해지는 경우에는 環境基準을 넘는 大氣汚染이 發生하고 있는가의 與否와 또한 그 危險性의 有無가 特別 排出基準을 適用하는 根據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스모그(smog·煙霧) 警報時의 措置의 强化를 爲하여 一定規模 以上의 煤煙發生施設에 對하여 事前에 煤煙量減少計劃을 届出시키고 都道府縣知事는 스모그警報時에는 이것을 參酌하여 煤煙量 減少를 爲한 措置를 取할 것을 勸告할 수 있게 되었다(第17條 第2項, 3項).

이것은 人體의 健康을 害칠 危險性이 있는 大氣汚染이 發生한 緊急時에는 可及的 迅速하게 事態의 改善을 圖謀할 必要가 있으며 이를 爲하여 知事의 從來의 煤煙排出者에 對한 協力要請에 附加하여 汚染에 對한 寄與度가 큰 大規模 煤煙發生施設의 設置者에 對하여 事前에 届出시킨 計劃을 參酌한 後에 煤煙排出量의 減少措置를 勸告할 수 있도록 規定한 것이다.

(5) 自動車排出가스에 關한 許容限度를 定함과 同時에 이것에 依한 汚染狀況에 關한 都道府縣知事의 測定에 關한 規定을 設定하였다(第19條, 第20條).

2. 電氣·가스工作物에 關한 規制

從來의 煤煙規制法에 있어서는 煤煙發生施設의 設置의 届出, 改善命令, 現場檢査, 報告徵收 等 規定의 主要한 部分은 電氣·가스工作物에 對하여서는 適用을 除外하고 各事業法에 依하여 規制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大氣汚染防止法에 있어서도 基本的으로는 이 方式이 踏襲되었다(第27條).

이것은 電氣工作物, 가스工作物인 煤煙發生施設에 對하여서는 各各 電氣事業法, 가스事業法의 體系下에서 煤煙의 排出規制를 充分히 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供給義務를 隨伴하는 公益事業의 圓滑한 遂行이라는 目的下에서 電氣工作物, 가스工作物의 保安維持와 併行하여 一元的으로 規制하는 것이 行政的으로 最善의 策이라는 생각에서 排出基準의 設定, 緊急時의 措置, 和解의 仲介 等의 規定을 除外하고는 排出規制에 關한 規定除外로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이 設定된 緊急時에 있어서의 煤煙의 減少措置에 關한 計劃의 届出과 이것에 依據하는 知事의 勸告는 電氣工作物, 가스工作物에도 適用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從來 適用除外로 되어 있던 知事의 報告徵收와 現場檢査의 規定은 緊急時의 措置에 關하여 必要한 限度內에서 大氣汚染防止法이 適用되기로 되었다.

그리고 電氣事業法, 가스事業法에 있어서는 電氣工作物, 가스工作物의 設置에 關하여 通產大臣의 許可가 必要하며 나아가서는 電氣工作物의 設置에는 工事計劃의 認可도 必要하고 또한 設備의 改善命令에 關하여서도 通產大臣이 技術基準 乃至 保安基準에 對한 適合命令을 내릴 수가 있는 等 公害防止規制가 可能한 規定이 存在한다.

騷音規制法

1. 騷音規制法의 槪要

最近에는 都市에 있어서의 公害 中에서 騷音問題가 大氣汚染과 水質汚濁 다음으로 重要한 問題가 되고 있다. 從來 地方公共團體에 있어서는 25個의 都府縣과 35個의 市町村에서 公

害防止條例 또는 騷音防止條例가 規定되고 이에 依據하여 騷音規制가 行하여지고 있었으나 國家에 依한 統一的인 法律上의 規制는 講究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本法은 公害對策基本法의 趣旨에 立脚하여 工場 및 事業場에 있어서의 事業活動과 建設工事에 隨伴하여 發生하는 騷音에 對하여 規制를 行하기 爲하여 制定된 것이다.

騷音規制法의 規制內容의 主要한 것은 아래와 같다.

(1) 工場 및 事業場의 騷音에 對하여서는 都道府縣知事가 都市의 市街地 및 그 周邊의 地域을 指定하고 指定地域內에 設置되는 顯著한 騷音을 發生하는 工場과 事業場에 對하여 指定地域의 土地利用狀況에 따라 規制基準을 定하고 所要規制를 行하기로 되었다. 이를 爲하여 이들 工場 및 事業場에 있어서의 騷音發生施設의 設置에 關하여 事前屆出制를 두고(第6條) 또한 規制基準에 適合하지 않은 騷音을 發生함으로써 周邊의 生活環境이 損傷된다고 認定될 때에는 騷音防止의 方法 等에 關하여 改善 等의 勸告 또는 命令을 行할 것이 規定되어 있다(第9條).

(2) 建設工事에 隨伴하는 騷音에 對하여서는 顯著한 騷音을 發生하는 建設作業을 對象으로 하여 指定地域 中에서 住居의 環境이 良好한 區域과 病院, 學校 等의 周邊의 區域에서 行하는 경우에는 事前屆出을 要한다고 規定한(第14條) 外에 一定한 基準에 適合하지 않은 騷音을 發生함으로써 周邊의 生活環境이 損傷된다고 認定할 때에는 騷音防止의 方法 等에 關하여 改善을 爲한 勸告 및 命令을 規定하고 있다(第15條).

(3) 騷音에 關聯된 紛爭에 對하여서는 騷音에 依한 被害에 關하여 民事上의 紛爭이 發生한 경우에 對하여 都道府縣知事에 依한 和解仲介의 制度를 設定하여 騷音에 關聯된 紛爭의 圓滑適正한 解決을 期하기로 되어 있다.

(4) 飮食店營業 等에 關聯된 深夜騷音 等에 對하여 地方公共團體가 必要에 따라 規制措置를 講究하는 義務를 가지게 되었다(第28條).

2. 電氣·가스工作物에 關한 規制

電氣工作物 또는 가스工作物로서 顯著한 騷音을 發生하는 施設을 設置하는 者에 對하여서는 施設設置의 屆出, 計劃變更勸告, 改善勸告 및 改善命令, 報告徵收 및 現場檢査 等의 規定은 大氣汚染防止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騷音規制法의 適用은 除外되고 電氣事業法 또는 가스事業法의 該當規定이 適用되기로 되었다(第21條).

이것은 電氣事業과 가스事業이 供給義務를 隨伴하는 公益事業이기 때문에 電氣, 가스의 圓滑한 供給을 確保하기 爲하여 電氣工作物, 가스工作物 全體와 一元的으로 規制하는 것이 行政上 最善의 方法이며 또한 電氣事業法, 가스事業法에 依하여 充分히 騷音規制를 行할 수 있는 體制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即 個個의 工作物의 設置를 許可, 認可를 거치게 하는 것을 爲始하여 設置後에도 技術基準, 保安基準의 維持義務를 課함으로써 嚴重한 規制가 可能하며 따로 騷音規制法으로 規制를 하지 않더라도 充分히 公害防止의 實效를 確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現在로서는 電氣事業法, 가스事業法의 技術基準에는 騷音에 關한 規定은 아직 設定되어 있지 않지만 騷音規制法의 規制基準이 決定될 때 새로이 規定될 豫定이다.

또한 建設工事에 隨伴하는 騷音에 對하여서는 事前屆出을 要한다고 되어 있으나 災害 其他 非常事態의 發生으로 建設作業을 緊急히 遂行할 必要가 있는 경우에는 이 屆出을 要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며(第14條 第1項) 公共性이 있는 施設 等의 建設工事에 있어서는 知事가 改善勸告 및 改善命令을 發動하는 경우에 그 早期完成의 必要性 等에 關하여 一般住民에 미치는 利害得失을 考慮하여 當該 建設工事의 圓滑한 遂行에 對하여 特히 配慮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 (第15條 第3項)